

2016.5.17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406호(2016.5.17.)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한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한다.

제4조 가입기간

- ①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1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로 한다. (이하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이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이하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이라 한다.)

제5조 재예치

- 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한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이자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퇴직연금정기예금 재예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 시 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퇴직연금정기예금 재예치 특약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특약 제5조 ①에 따라 동 예금의 매 만기일마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하는 것으로 한다. 단,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으로 자동 재예치 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으며 고객의 별도 의사 표시에 따라 처분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의 경우 최고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재예치기간을 1년으로 한다.
- ④ 재예치시에는 재예치 당일을 예금의 새로운 신규일로 한다. 재예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의 이자율을 재예치일의 이자율로 하여 적용하고, 재예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한다.

제6조 이자적용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② 만기일 전에 고객이 지급 청구 할 때에는 신규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

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 이자율

특별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이자율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¹⁾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가입자 제도 전환 □ 가입자의 사망 □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 □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개인형IRP에 한함) □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IRP에 한함)	□ 계약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이자율 □ 계약기간 1년 이상 • 경과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 경과기간 1년 이상²⁾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
□ 퇴직연금수수료의 납부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객에게 적용된 이 예금의 이자율

1)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2) 경과기간별 경과년수 :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경과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

④ 예금의 만기 시 자동으로 재예치 되므로 만기 후 이자율의 적용은 불가하다.

제7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8조 분할해지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전항의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제9조 거래제한

이 예금은 양도,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제10조 기타

위 특약 사항은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한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한다.

